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제출년월일 : 2007. 7.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제1호내지제3호 및 제8호)
 - (1) 전주·수도관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주차장 진입로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2)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지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38퍼센트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산정 기준을 유지함.

3. 참고사항

- 「도로법」 제43조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3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를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을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으로 한다.

제2조중 “도로법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을 “「도로법 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3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점용료산정기준표(조례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 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41,400
		기타			20,7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150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u>구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u>	<u>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u>	제명 띄어쓰기 적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 - 「농어촌도로정비법」 ----- ----- -----	법령표기 형식 변경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 「도로법 시행령」 -----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 ----- -----	법령표기 형식 변경 법령 띄어쓰기 적용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생략)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정기준 「별표」 변경
제4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생략)	제4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현행과 같음)	
제5조(징수) (생략)	제5조(징수)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규칙) (생략)	제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전주, 공중전 화등지 상시설 물	전주,가로등,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1개	1년	600	1개	1년	전주,가로등,그밖에 이와 유사한것	850		
	지중배전용기기함,무선 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 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 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 지기,주차측정기,우체통, 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 함,그밖에이와유사한것				900			지중배전용기기함,무선 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 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 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 지기,주차측정기,우체통, 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 함,그밖에이와유사한것	1,250		
	공중전화,그밖에이와유 사한것				24,100			공중전화,그밖에이와유 사한것	24,100		
	송전탑,그밖에이와유사 한것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 격에0.0 5를곱 한금액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 격에0.0 5를곱 한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지하 매설물	수도관,배 수관,농업 용수관,전 기관,전기 통신관.가 스관,송열 관,송유관, 작업구(맨 홀)전력,통 신구,기타 이와유사 한것	지름0.1m이하	길이 1m	1년	150	수도관,배 수관,농업 용수관,전 기관,전기 통신관.가 스관,송열 관,송유관, 작업구(맨 홀)전력,통 신구,기타 이와유사한 것	길이 1m	1년	200		
		지름0.1m초과 0.2m이하			300				지름0.1m초과 0.2m이하	400	
		지름0.2m초과 0.4m이하			600				지름0.2m초과 0.4m이하	850	
		지름0.4m초과 0.6m이하			900				지름0.4m초과 0.6m이하	1,250	
		지름0.6m초과 0.8m이하			1,200				지름0.6m초과 0.8m이하	1,650	
		지름0.8m초과 1.0m이하			1,500				지름0.8m초과 1.0m이하	2,050	
		지름1.0m초과 2.0m이하			2,250				지름1.0m초과 2.0m이하	3,100	
		지름2.0m초과 3.0m이하			3,750				지름2.0m초과 3.0m이하	5,200	
		지름3.0m초과			5,250				지름3.0m초과	7,25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 매설물	어스 앵커, 암거 기타와 유사한 것	지름0.1m이하	길이 1m	1년	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 매설물	지중 정착 장치(어스 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m	1년	300	
		지름0.1m초과 0.2m이하			450					600	
		지름0.2m초과 0.4m이하			900					1,250	
		지름0.4m초과 0.6m이하			1,350					1,850	
		지름0.6m초과 0.8m이하			1,800					2,500	
		지름0.8m초과 1.0m이하			2,250					3,100	
		지름1.0m초과 2.0m이하			3,350					4,600	
		지름2.0m초과 3.0m이하			5,600					7,750	
		지름3.0m초과			7,850					10,850	
		3.광고탑, 광고판, 간판, 시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일시설치한 것 (1월미만점용)	표시 면적 1㎡
기 타	표시 면적 1㎡		1년	15,000		표시 면적 1㎡	1년	20,700			
	(신설)					돌출간판	표시 면적 1㎡	1년	9,9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설치한 것		점용 면적 1㎡	1일	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설치한 것	표시 면적 1㎡	1일	50	
	기타의용도				100		150				
아 치	도로횡단		표시 면적 1㎡	1년	30,000	아 치	도로횡단	표시 면적 1㎡	1년	41,400	
	기 타				15,000		기 타			20,7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용시설 및 재료			점용 면적 1㎡	1일	1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용시설 및 재료			점용 면적 1㎡	1일	150
기 타					토 지 금액에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 지 금액에0.05를 곱한 금액

참 고 자 료

□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③삭제<1970.8.10>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6.7.1, 2004.7.20>

④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14]

제26조의4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8.14]